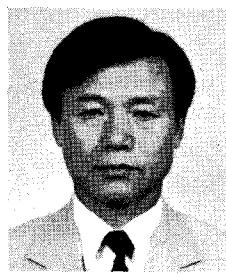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대책 및 구제 방법



黃義昌
<특허청 상표심사 2과장>

80년대 탈냉전의 선언과 기술전쟁의 예고는 영업비밀을 자본, 노동, 시장등과 함께 경영의 4대요소로 부상시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까지도 개입된 산업스파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얼마전 국내 굴지의 기업 S사가 경쟁사인 H사의 크레이恩 설비 사전촬영 사건이라든가 영국의 컴퓨터 해커가 컴퓨터 전산망을 침입하여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과학기술 정보를 복사한 사건, 독일연방 정보국 요원이 보스턴 소재 생명공학기업에 근무하는 여자직원을 결혼을 미끼로 유인하여 첨단정보를 빼낸 사건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2년전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속에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여 왔다.

영업비밀 중심의 시대에서는 기업은 어떻게 하든지 타기업에 자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함은 물론 타기업의 영업비밀도 자사에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영업비밀의 관리모형을 개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일이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미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생산기술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 예전대 고객의 명부, 판매매뉴얼, 경영기법, 투자계획등의 정보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와같은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보유자가 다음과 같이 이를 생산, 이용, 관리하고 있는 자와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 등을 중심으로 한 인적관리와 영업비밀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관리 및 이와 관련한 사무관리, 장소관리등을 철저히 할 때에만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인적관리이다.

영업비밀은 종업원이나 계열사등 거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내부인에 의한 누설과 방문객이나 산업스파이등과 같은 외부인에 의한 탐지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종업원등 내부인에 대한 관리는 채용전 면접을 통해 인성, 성실성, 직업관 등과 같은 기업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업문화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 채용하고 채용시에는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며 채용후는 고용기간중 겹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는 채용시의 영업비밀유지계약이나 서약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퇴직시에는 퇴직의사를 밝힌

종업원에게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의 명세를 제시하고 이에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고지한 후 퇴직후 일정기간 영업비밀 사용금지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한다.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의 형식을 취해야 하고 지켜야 할 비밀유지의무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효한 대가지불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관계자등에 대한 관리는 거래전에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등을 징구하고 거래시에는 경쟁사업금지를 의무화하는 전속계약등을 체결하는 등 특별약정 하여야 하며 거래후에는 일정기간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권 내에서는 영업 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타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은 방문자등에 대한 관리로서 방문전에 공식, 비공식방문을 불구하고 반드시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들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 방문자 기록부에 기재하고 방문시에는 방문전에 제출한 명단과 대조하고 방문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승인 없이는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등을 징구한다.

또한 방문시에는 카메라등 휴대품의 소지를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금속탐지기에 의한 몸수색을 한다.

이러한 방문자 외에도 산업스파이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에 카드시스템에 의한 점검은 물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비디오장치의 설치, 수상자 색출장치를 한 특수보안건물의 이용등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정보관리이다.

영업비밀은 그 중요도에 따라 1급, 2급, 3급, 사외비, 사내비등으로 등급을 책정하고 활용가치에 따라 3년, 2년, 1년등으로 보호기간을 설정한다. 이와같이 분류한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고 금고나 이중자물쇠 등 특수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용기에 보관한다.

컴퓨터 화일의 접근 또한 패스워드만이 가능하도록 통제함은 물론 수시변경을 통하여 비밀

화일에의 접근을 제한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열람, 복사, 대출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관리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기록, 정리한다.

셋째, 장소관리이다.

영업비밀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나 보호를 요하는 연구시설, 생산시설 등이 있는 곳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누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넷째, 정보관리체제의 구축이다.

영업비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가칭 영업비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영업비밀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한다. 또한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취급자를 지정 또는 인가하고 관리방법에 있어서도 전담부서에서 중앙집중관리할 것인가, 개별 부서별로 분산관리할 것인가를 정한다.

다섯째, 이상의 영업비밀관리방법 외에도 종업원의 불만에 의한 영업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고충처리센터의 설치, 영업비밀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의 강화 및 영업비밀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한 조치방법 등도 영업비밀 관리의 간접적 관리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적극적 관리방법 외에도 경쟁사로 부터 기소를 당하지 않도록 경력사원의 전입채용은 반드시 전직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상품, 뉴비즈니스등에 관한 아이디어 제공이 우편 접수된 경우에는 개봉 심사 채택하기전에 반드시 제공자의 사전승락을 받는다.

또한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 취득을 제안받을 때에는 정당한 관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권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취득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와같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때에는 소송절차에 의한 구제를 강구하

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구제에 앞서 화해등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양자 모두에게 최상의 구제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화해등에 의한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 구제방법에 의한 해결을 도모한다. 민사적 구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등의 폐기 제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상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는 오랜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급한 대로 침해해왕의 정지나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같은 민사적 구제수단 외에도 임원 또는 직원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와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업비밀의 법적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구제방법등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위에서 소개한 관리방법을 중심으로 각자의 기업문화에 알맞는 최적의 관리모형을 개발함은 물론 주요경쟁

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사법제도 및 관행도 정확히 이해하여 영업비밀의 국제분쟁에 적절히 대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관리 능력과 분쟁해결능력을 제고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예를들면 미연방특허법은 특허안건을 충족한 발명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정보에 대해서는 먼저 특허대상 여부를 조사해보고 만약 특허안건을 갖춘 발명인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또 영미법 국가에서는 소송절차 초기에는 법원의 직접 개입없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증거조사 절차를 수행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절차가 상당기간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유리한 증거의 확보여부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디스커버리를 마친 사건은 거의 90%정도가 공판 개시 전 화해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10% 정도가 재판에 의해서 해결되는데 제일 먼저 배심원을 선정하게 된다. 배심원은 법원 소재지의 평범한 시민중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배심원이 원고나 피고 어느쪽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안 발명장려관 무료전시 발명품 모집 내

본회는 상설 발명품 전시장인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발명장려관에 전시할 발명품을 5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특허, 실용신안, 의장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발명(고안)품이면 전시가 가능합니다.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발명(고안)품은 1년동안 무료 전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되며, 이를 통해 권리의 양도, 매매, 실시권허여를 알선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본회 발명지원부 (02)551-5571/2